

외국의 언론자유규제기구

-기능과 실태를 중심으로-

서 정 우

1. 문제의 제기

한 세기에 가까운 한국언론사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최초의 언론자유규제기구가 정식으로 설립된 지 20 년이 지났다. 그리고 또한 한국언론은 제 5 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언론사에서는 보기 드문 일대 기구개편을 경험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침해규제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탄생을 맞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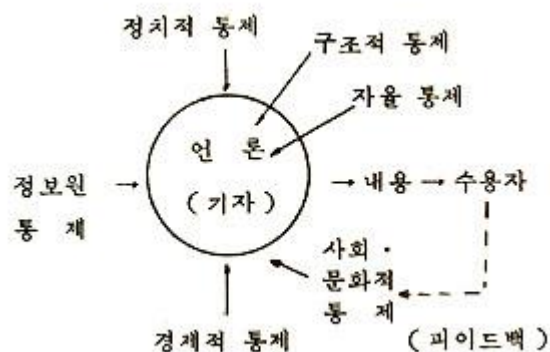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서 우리는 언론창달을 위해 침해규제기구의 기능과 실태를 한번 재음미해볼 필요성을 느끼며 특히 외국에 있어서 그러한 기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가를 파악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이러한 작업은 일차적으로는 외국에 있어서 언론자유기구의 기능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이차적으로는 한국에 있어서 침해규제기구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게 된다. 이것이 본 고의 목적이며 문제의 제기에 해당한다.

2. 자율규제의 개념과 의의

외국에 있어서 언론의 자율규제기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자율규제의 개념과 뜻을 우선 밝혀둘 필요가 있다.

언론이 대중의 정보적 요구, 내지 오락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언론내외의 수많은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외적으로는 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정치체계로부터의 영향력 요인에서부터 경영진이나 광고주에 의해 대표되는 경제체제의 요인, 사회규범이나 문화전통으로 대표되는 사회 체제와 문화체제의 요인,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의 영향력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다. 내적인 차원에서는 언론기관내부로부터 연유되는 구조적 통제에서부터 언론인들이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이나 규범에 의해 그들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규제의 요인 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본 고의 연구 대상인 자율규제는 언론의 내적통제의 한 유형인 언론인 자신의 자율통제를 의미한다. 언론통제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여러 형태의 통제들은 사회나 시대가 계몽되고 발전되면 될수록 정치적 통제 →경제적 통제 →사회·문화적 통제 →구조적 통제 →자율통제형태로 진화하면서 발전되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 작용하는 통제 메카니즘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언론은 대중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수문장(gatekeeper)이며 대중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생활한다. 대중은 대중사회가 갖는 특성과 대중의 본질적 속성때문에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에 의해서만 사회적 경험교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언론은 대중의 생활과 경험교환 나아가서는 그들의 정신세계에 결정적으로 영향하는 사회적 공기관이다.

사회적 공기관으로서 언론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스럽고 책임스러워야 한다. 이 경우 자유란 가능한 한 외적 통제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하며, 책임이란 자기의 행위를 책임지는 윤리성,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을 의미한다. 언론에 있어서 자율규제가 최종목표이며 언론사가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하겠다.

자율규제는 언론이 스스로 내적인 통제와 규제를 행함으로써 외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면에서 자율규제는 수 많은 외적 통제의 유혹이나 간섭으로부터 자기자신을 사전에 보호하고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율규제는 또한 전문화(professionalization)의 첩경이다. 일반적으로 전문화에의 길은 교육과 자율통제로 대별되는데 자율통제는 자율기구의 설치운영과 윤리강령의 제정과 실천으로 구현된다. 각 나라마다 각기 다양한 형태의 자율기구와 윤리강령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한가지 공통된 점은 자율통제 쪽에 가장 중요한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 역사를 언론통제사 차원에서 조명해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방향은 자율통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언론과 정부와 시민의 삼각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역시 언론인들이 자기의 윤리적 기준과 전문인의 규범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자율통제하는 메카니즘의 구현이 되겠다.

이것이 자율규제의 기본정신이며 언론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역사적 방향이 되겠다. 이것이 또한 언론기본법에 따라서 한국에 언론중재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배경중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3. 외국에 있어서 자율규제기구

외국에 있어서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논의는 목적에 따라 국가별로 전개될 수도 있고 또한 형태별로 전개될 수도 있겠다. 본 고에서는 자율규제기구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를 한정해서 국가별로 논의하겠다.

1) 스웨덴의 자율규제기구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기행위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처음으로 구현된 국가가 스웨덴이다. 1916년 스웨덴의 전국기자연맹은 자율규제를 목적으로 신문평의회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언론자율규제기구의 효시가 되고 있다.

신문평의회는 사회 저명인사와 신문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주로 기금에 의존한다. 한편 평의회에 의하여 견책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신문협력활동위원회가 결정한 행정과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이 벌금 역시 운영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평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감찰인, 스웨덴 변호사협회, 전국기자연맹, 스웨덴신문기자협회, 스웨덴신문발행인협회가 임명한 인사와 기타 대중과 긴밀히 관계되는 저명인사로 구성된다. 정기간행물이나 일간신문과 같은 신문조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인사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며 2년으로 되어있다.

평의회의 주요업무는 신문감찰과 제출된 안건의 심의로 구성된다. 평의회는 신문감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문감찰인을 두고 있으며 감찰인 업무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신문감찰인은 평의회정관 제 4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신문기자로서의 직책을 현저히 위반한 사건을 심의하고 감찰한다. 견책을 받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은 감찰인이 견책문을 발표한지 10일 이내에 제일 먼저 발행되는 지면의 현저한 위치에 동 견책문 전문을 게재해야 하며, 그것을 삭제 또는 지연시키지 못한다.

신문이나 제소인이 다같이 견책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신문은 10일 이내에 그리고 제소인은 1개월 이내에 평의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소안건은 그 안건내용이 제소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출판된 것이어야만 비로소 유효하다.

평의회는 판결을 하나의 의견형식으로 발표하며 이것은 일종의 공개성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1980년 통계에 의하면 스웨덴신문평의회는 1년 동안에 약 4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의회와 비슷한 형태로 옴부즈맨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18세기 초 일종의 행정기구형태로 시작되었으나 1969년에 와서 언론옴부즈맨제도로 변모, 발달되었다.

초창기 옴부즈맨은 입법기관에 의해 선출 · 임명되었으며 정부관리의 행위에 대해 시민의 불평과 항의를 접수하고 그 행위의 적합성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행정기관의 그릇된 행정행위를 수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항의를 독자적으로 취급, 이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공표할 권한을 갖고있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관리를 법원에 제소하여 벌금형이나 심한 경우에는 파면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에 의한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시민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행정적 제도를 언론이 도입해서 언론에 의한 시민의 권리침해를 조사하고 한편으로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항의를 접수해서 반영하는 언론의 옴부즈맨제도로 변모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옴부즈맨제도는 신문평의회의 운영과 더불어 언론의 자율규제기구의 대표적 예가 되고 있다.

2) 영국의 자율규제기구

영국의 경우 역시 스웨덴과 비슷하게 신문총평의회(General Council of the Press)가 자율규제기구의 대표가 되고 있다. 영국에 있어서 신문총평의회는 1953년 6월 1일에 처음 창설되었으며 그것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인 계기는 언론자유에 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가 1947 ~ 1949년 기간동안 조사한 독점을 포함한 언론 전반에 관한 문제 제기가 되겠다. 신문총평의회는 1963년에 와서 신문평의회(Press Council)로 개칭되었다.

영국에 있어서 신문평의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영국언론의 확립된 자유를 보존한다.
- (2) 영국언론을 지고의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기준에 맞게 유지한다.
- (3)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만들은 적절하고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심의해서 행동에 옮긴다.

(4) 공중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의 유통에 저해되는 사태를 심의한다.

(5) 언론독점과 집중사태를 조사해서 그것에 관계되는 통계를 공적으로 발표한다.

(6) 적절한 계기에 정부, 유엔관계기관, 그리고 해외언론 단체들에 대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평의회는 그 활동상황을 보고서의 형식으로 발간한다.

신문평의회는 26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독립적인 위원장 1 인, 전문가 20 인, 그리고 일반대중을 대표하는 인사 5 인 등이다.

평의회는 그 안에 소위원회(General purposes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실제적인 업무는 이 소위원회가 맡고 있다.

평의회는 1 년에 4 번 소집되며 소위원회는 매달 소집된다. 영국의 경우는 스웨덴의 경우와는 달리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평의회에 직접 제소하기를 권장하지 않고 일단 해당 언론기관의 책임자에게 접촉케 하여 해결하도록 도운다. 만일 시민과 언론 당사자간에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의회 소위원회가 개입하게 된다.

평의회 재정은 평의회에 관계되는 모든 회원사가 내는 비용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회사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경우 평의회는 독자적인 윤리 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사건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판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자단체(British Institute of Journalists)는 각자의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하고 있다.

평의회가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이룩한 몇 가지 판결기준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내용규제 사항

(1) 언론은 독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어서는 안된다. (독자의 필요성에 유의해야 한다).

(2) 성과 범죄 관한 지나친 보도는 삼가해야 한다.

(3) 범죄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해야 하며 법인을 일종의 영웅시 하는 보도는 규제되어야 한다.

(4) 강간에 관한 자세한 보도는 보도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희생된 미성년이나 부녀자의 신원은 일체 보도 금지되어야 한다.

(5) 신문은 사건보도에 있어서 이름만을 취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과 인격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 프라이버시 침해

(1) 재판과정은 그 전부가 반드시 공개됨이 바람직하다.

(2) 사생활 침해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다. 전문윤리 의식

(1) 기사의 철회나 정정요구는 반드시 진실에 기초되어야 한다.

(2) 기사는 광고적 이해와는 독립되어 취급되어야 한다.

(3)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그들의 명성과는 관계없이 공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가족이나 일반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은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

(5) 어린이 관계 보도는 최대의 윤리성을 발휘해야 한다.

라. 뉴스에의 접근

(1) 신문은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의 문제를 정부관계기관의 시각에서 보다 독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2) 황실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

(3) 병원관계기사는 환자나 환자가족의 바람이 반영되도록 보도되어야 한다.

마. 뉴스에 있어서 성의 문제

(1) 지나간 성 범죄 사건을 계속 기사화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2)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성관계 기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3) 석방된 성관계 부녀자의 보도는 그들의 정상인으로서의 회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3) 미국의 자율규제기구

미국은 자율규제 기구로서 협회형태, 평의회 형태, 옴부즈맨 형태 등 다양한 형태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다.

협회형태의 자율규제 기구로서는 미국신문편집인협회(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가 있는데 이 협회는 1923년에 이미 신문규범(Canons of Journalism)을 제정해서 실천하고 있다. 7개항으로 구성된 이 규범은 언론인의 책임성, 신문의 자유, 독립성, 성실성, 진실 및 정확성, 불편부당성, 공정성 그리고 순결성으로 되어있다.

이 규범은 1975년에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강제력이나 규제적 메카니즘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인들이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제정했다는 사실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평의회 형태의 경우 미국은 스웨덴이나 영국과는 달리 전국적인 규모의 평의회가 없고 지방평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지방평의회는 구성과 운영은 각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취지나 정신은 앞에서 설명한 평의회와 같다고 보겠다.

미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자율규제 기구로서는 옴부즈맨제도인 것 같다. 원래 이 아이디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스웨덴의 것인데 1967년 6월 뉴욕 타임즈의 논설면 부편집장인 A. H. Raskin이 그 중요성을 제창했고 곧 이어 루이스빌 꾸리어 저널(Louisville Courier Journal)지가 그 제도를 정식 채택했다.

이 제도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언론기관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항의를 비교적 독립적인 위치에서 조사해서 공표함으로써 신문과 독자의 오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에서는 1981년 현재 전국의 일간지 중에서 26개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제도를 처음 채택한 루이스빌 꾸리어 저널지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제도가 미국에서 차츰 확산되어가자 1980년 5월에는 신문옴부즈맨기구(Organization of Newspaper Ombudsman)가 조직되어 워싱턴에서 첫모임을 가졌다.

옴부즈맨제도에 대하여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제시된 방향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1) 옴부즈맨은 신문사와의 개인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독립적이고도 객관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외부의 언론인이나 언론관계 전문가 중에서 계약에 의해 고용됨이 필요하다.
- (2) 옴부즈맨은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독자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편집국에서 떨어진 곳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운영해야 한다.
- (3) 옴부즈맨은 사전검열 없이 해당신문에 대한 비평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개인칼럼을 보장 받아야 한다.
- (4) 옴부즈맨은 그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인원의 독자적인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 (5) 옴부즈맨은 신문과 독자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신문제작의 향상을 위해 조사 내용을 체계적인 보고서로 출판해야 한다.

1981년 4월 19일 워싱턴 포스트지의 옴부즈맨인 Bill Green은 동지의 기자에 의해 날조된 "지미의 세계"라는 기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를 착수해서 "자넷트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5페이지에 걸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공신력을 약화시켰다가 보다는 오히려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사건은 작게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고 크게는 옴부즈맨제도를 포함한 언론창달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보겠다. 한국 언론에게 많은 문제를 시사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 평가된다.

4) 일본의 자율규제기구

일본은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협회형태와 자율적인 지면평가제도 등을 혼용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신문협회(Japan Newspapers Association)가 신문평의회나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신문협회가 독자적인 윤리 규정에 따라 상당한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협회는 어떤 특정 회원사가 심각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특정신문사를 신문협회로부터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신문은 이러한 협회의 자율규제기능과 별도로 자체의 인사에 의한 신문지면심사제도와 외부인사에 의한 신문지면 비평제도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외부인사에 의한 신문지면 비평제도의 정신은 옴부즈맨제도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에 있어서 신문의 지면심사제도는 1922년 아사히신문이 처음 도입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광범위 하게 운용되고 있다. 지면심사에서 특히 강조하는 국면은 (1) 기사내용의 정확도, (2) 가치판단의 적부, (3) 정리의 잘 잘못, (4) 사용문자 · 용어 · 숫자의 정확도, (5) 타지와외의 기사게재의 속도비교와 내용상의 비교, (6) 인권과 품위등에 관한 배려, (7)문장표현의 우수성 여부, (8) 기획기사의 적부, (9) 사진의 적부, 그리고 (10) 인쇄의 선명도 등이다.

심사결과의 처리방법으로는 구두전달이 14 개사, 심사보 등의 문서전달이 10 개사, 그리고 병용이 35 개사에 해당된다. 심사보는 일보가 10 개사, 과보가 14 개사, 월보가 9 개사, 기타의 경우가 18 개사이며 배포범위는 편집국은 물론 최고경영자에서부터 기술직직원, 그리고 지국에까지 이른다.

외부인에 의한 신문의 지면비평제도는 1977 년에 산케이신문이 "매스컴논단"을 상설한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뒤를 이어 마이니치신문이 "신문을 읽고" 칼럼을, 1978 년에는 아사히신문이 "나의 지면비평"을 상설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5) 기타 국가들의 자율규제기구

자율규제기구의 운영은 이제 세제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자율규제기구의 형태나 운영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자율규제가 결국 언론의 최종 국면이란 사실에 대한 인식은 광범위한 것 같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평의회나 위원회의 형태이며 그 다음이 협회형태, 옴부즈맨형태, 법원형태로 나타난다. 법원형태란 완전한 법원의 재판형태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순수한 자율규제 기능에다 법원기능을 어느 정도 혼합한 절충식 형태에 해당한다.

이태리의 출판명에 법원이라든가 터키의 신문명예재판소 그리고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비교적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겠다. 한국의 중재위원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평의회 형태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위원회 역시 여러 가지 명칭을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위스의 신문공정구현위원회, 남아연방의 신탁위원회, 벨기에의 신문윤리위원회, 그리고 덴마크의 신문심사회 등이 있다. 독일의 신문평의회는 1978 년 12 월 3 일에 신문윤리강령(언론규준)을 정식으로 제정했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이 윤리강령은 직업윤리의 준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두에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6 조에 "독일신문평의회에 의하여 공식으로 결정된 징계를 당해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행위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징계내용의 보도를 간접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 윤리강령은 프라이버시의 침해, 명예훼손의 문제, 공정재판권의 보호, 청소년보도의 문제, 의료관계보도, 성범죄관계보도, 정보원의 보호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4. 맺는말

언론의 자율규제기구 역시 사회적 기구(social institution)라면 분명히 그 지역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운영되는 언론이 처해있는 상태의 반영이라 생각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특정 지역사회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속에서 운영되는 언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의 객관적 여건이 그 사회나, 그 언론에 적합한 규제기구를 창출해 내었다고 보겠다.

언론규제를 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치권력에 의한 규제, 경제적 권위에 의한 규제, 사회적 규제, 문화적 규제, 언론기관내의 구조적 규제, 그리고 언론인 스스로의 자율규제의 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경향의 일단을 발견할 수 있겠다.

자율규제는 크게 위원회나 평의회형태, 협회형태, 옴부즈맨형태, 법원형태, 그리고 기사심사제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의회형태가 가장 보편적인 자율규제기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특정 지역사회가 어떤 형태의 자율규제기구를 설치·운영 하든 간에 가장 중시되는 언론의 침해유형으로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 공정재판권의 침해 등이 있으며 가장 문제시하는 보도내용은 성범죄관계의 보도, 청소년관계의 보도, 부녀자관계의 보도, 국민보건과 직결되어 있는 의약이나 의료관계보도 등이 되겠다.

자율규제는 어디까지나 자체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전제할 수는 없으나 각국마다 순수한 자율규제에다 효과적인 선의의 강제력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더불어 자율규제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가 앞으로의 주요과제로 제기된다고 보겠다.

□ 연세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 졸업 (신문학석·박사)

□ 저술 : 신문학이론(공저), 언론통제이론(공저) 외 다수

☐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 방송학과교수 및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장